# 개인정보,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용학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도 될까?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
- 국회의원인 甲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될까?

❖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한 것임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PC방 주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일까?

- ❖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기 어렵다.
-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 PC 사용정보는 PC 사용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PC방 운영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558(병합) 판결)

#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신원조회 서류 요구는 가능할까?

### ❖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위반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서는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 임용예정자로 규정
- 필기시험 응시자나 1차 합격자, 면접시험 대상자 등은 최종합격자가 아니므로 모두가 임용예정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만 신원조회 서류를 요구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2016. 12. 27. 결정, 16진정0373700)

# 징계사실을 게시판에 올려도 될까?

## ❖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최소한의 원칙 위반

-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사례를 전파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강화라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사례를 전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징계 사실의 공문 공람 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2018. 8. 29. 결정, 18진정0481400)

##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만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정보 제공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 ❖ 민감정보의 목적외 제공은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 경찰은 이미 휴대폰 위치정보 등을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음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서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요양급여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필요성,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각 요양급여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 등을 추가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
-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해도 될까?

####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 ○○택시 회사는 콜 관제시스템에서 택시기사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택시기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파악, 택시기사들의 도박이나 음주를 확인
- 2년여에 걸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장소 등을 파악하는 등 택시기사의 동향 확인에 콜 관제시스템을 활용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고 위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9. 28. 2014다56652 판결)

## 보육교사가 반대하는데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도 될까?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중대한 공익임
-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 아파트관리소장이 CCTV 화면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해도 될까?

#### ❖ CCTV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음

-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자치 기구
  -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대자보를 훼손한 것은 공동생활 질서유지와 관련된 것임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05 판결)

##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여도 될까?

#### ❖ 다른 대체수단과 함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함
- 전자태그 방식이나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문정보로만 출퇴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2018. 5. 2. 16진정0320900)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을 준수하였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까?

- ❖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출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취급자가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에 해당함
- 만약 이러한 보호조치를 미이행하여 접속권한이 없는 제3자가 손쉽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갔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 개인정보 유출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24911·24928·24935 판결)

#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려면....



# ☞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

-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활용 금지
-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 감사합니다